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형벌 부과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59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형벌 부과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9.
3. 회부연월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형벌 부과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벌칙) ① <u>제44조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u>	법률 제2120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벌칙) ① <u>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u> —————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제26조의5 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는 제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¹⁾의 사업시행자²⁾는 시장정비사업이 끝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추진위원회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생략)

제41조(사업시행자 등) ①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났을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³⁾하여야 함. 현행법은 이를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곧바로 형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시정을 명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개설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⁴⁾에서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행정제재 중심의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구조”로 전

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각호 생략)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략)

4)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과잉형벌 건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2025.9.30.

환함으로써 기존의 과잉처벌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안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데 있으므로, 부칙의 시행일과 경과조치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벌칙 완화 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⁵⁾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장정비사업 완료 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5)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156호

의무 위반 사례의 상당수는 범죄적 고의성이 낮아⁶⁾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단계성을 갖춘 합리적 집행체계로 정비할 필요⁷⁾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6)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 완료 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사유는 제도 인지 부족, 사업 주체가 다수임에 따른 책임 주체 혼선, 행정절차 지연 등임.

7)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 완료 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 위반은 그 위반 행위가 계속적이거나 불가역적이지 않고, 등록 의무 이행을 통해 단기간 내에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음.